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해 양 경 찰 청 소 속 경 찰 공 무 원
임 용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반직 임용후보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젊고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해 해양경찰 채용후보자의 임용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며,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 한국사 검정제 도입 등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과별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을 전문성 검증에 필요한 과목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31조)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검정시험 과목은 제외함(안 제33조)

라.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심사·시험 승진 비율 조정(안 제52조)

마. 승진 비율 조정에 따른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비율 조정(안 제72조)

바. 해양경찰 관련 학과 재학생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학점 이수 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2)

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6)

아.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 및 기준 등급을 설정함(안 별표 7 및 별표 7의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임용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

하게 적어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기준 점수 또는 기준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어 과목 : 별표 7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한국사 과목 : 별표 7의1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33조제1항제2호 중 “과목 총점”을 “과목(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제외한다) 총점”으로 한다.

제52조제4항제1호 본문 중 “계급별로”를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으로,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4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와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4.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 중 “심사승진후보자 6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40퍼센트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경정·경감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후보자 70퍼센트, 시험승진 후보자 30퍼센트로 한다.
2.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후보자 60퍼센트, 시험승진 후보자 40퍼센트로 한다.

별표 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3항제3호나목 관련)

인 정 과 목
<u>해양경찰학개론</u>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해사법규, 해양경찰 경무론, 해양경비론, 해양안전론, 해양수사(외사를 포함한다)론, 해양정보론, 해양치안정책론, 해양 <u>오염</u> 방제론, <u>선박</u> 운용론, <u>해양경찰영어</u> , 해사영어, 선박일반(항해·기관), <u>내연기관</u> , <u>보조기계</u> , <u>수산법규</u> , <u>수산학개론</u> , <u>어구·어법·어로학</u> , <u>어장학</u> , <u>인명구조학(수영포함)</u> , <u>전기전자</u> , <u>전파통신공학</u> , <u>무도학(체포술 포함)</u> , <u>해양법</u> , <u>헌법</u> , <u>항해학</u> , <u>수색구조론</u> , <u>해상교통관제론</u> , <u>항해실습</u> , <u>기관실습</u> , <u>해양경찰법제</u> , <u>범죄학</u> , <u>해양기상학</u> 또는 <u>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과목</u>

비고

각 과목(유사과목 포함)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3학점으로 한다.

[별표 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제31조 관련)

계급별	경과	해양	수사	특임			항공		정보통신	
	분야	해양	수사	구조	특공	구급	조종	정비	전산	통신
총경 · 경정	필수	형법, 국제법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선택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중 1과목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감 · 경위	필수	행정법, 형법, 국제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선택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1과목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중 1과목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사 · 경장 · 순경	필수	해양경찰 학개론,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 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 학개론, 잠수이론	해양경찰 학개론, 잠수이론	해양경찰 학개론, 응급구조 실무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엔진	컴퓨터일반 네트워크 보안 정보관리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선택	항해술, 기관술 중 1과목								

비고

1. 항공경과 시험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는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2. 해양경과 시험의 필수과목 중 "해사영어"는 출제 범위에서 해상운송, 해상보험 및 기관학 분야를 제외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사 이하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필수과목은 해사영어·해양경찰학개론·형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항해술 또는 기관술 중 1과목으로 한다.

[별표 7]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31조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경정	간부후보생 (경위)	순경(신설)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픽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lob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중앙일보(주)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관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별표 7의1] (신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31조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경정, 간부후보생 (경위)	순경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관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별표 8]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34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관련)

$$\text{조정점수} = \left\{ \frac{(\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right\} \times 10 + 50$$

비고

1.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응시인원} - 1}}$$

2. 조정점수 산출 결과 0점 미만은 0점으로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3조, 제52조제4항제1호와 제72조제1항,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1조, 제33조, 별표 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임용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u> <u>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u> <u>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u> <u>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u> <u>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u> <u>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u>

제31조(시험과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5와 같으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영어 과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나. 별표 7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경사 이하 채용시험은 제외한다)

2. 한국사 과목: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한국사시험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체

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31조(시험과목) -----

---. -----

- 있으며 기준 점수 또는 기준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1. 영어 과목 : 별표 7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한국사 과목 : 별표 7의1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생략)

②·③ (생략)

제5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

1. (현행과 같음)

2. -----
----- 과목(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제외한다) 총점-----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
은 -----

----- 70퍼센트-----

----- 30퍼센트-----

----- <단서 삭제>

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 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부족한 인원을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

<신 설>

⑤·⑥ (생략)

제72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2.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
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40퍼센
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
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

4.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
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
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
정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
르게 정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72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
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은 심사승진후보자
6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40퍼
센트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등) ①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정·경감 계급으로의 승진
은 심사승진후보자 7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30퍼센트로
한다.

2.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은 심사승진후보자 6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40퍼센트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32) 835 - 2335